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2022/ 7/ 6 통권 1578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CEO 에세이 - 이해의원장

CEO, 끝이 좋아야 한다(3)

기업승계 세무컨설팅 최초 실시

경영관리실 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중 회계사: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등 부동산의 범위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거래 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 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업승계 세무컨설팅 최초 실시
- 2021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2023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유형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교환가치 반영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됨 (p.12)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배당소득의 종합소득세 과세여부와 관련 쟁점들>

배당원천	과세이유, 과세방법	과세제외 등
직접배당	누적잉여금의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은 종합소득 합산 + 배당소득 총액화 11% 가산	도관법인
의제배당	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 기업합리화 적립금 등)의 자본전입(무상증자 등)	자본준비금 감액 재평가적립금
무상 주식	과세 자기주식소각액(2년내 자본전입), 자기주식을 다른 주주가 배당받음	과세
	과세 제외 주식발행초과금, 합병·감자차익의 자본전입(무상증자)	과세 제외
배당 총액 가산	대상 일반잉여금 배당은 법인세 기본세율인 11%를 배당금액에 가산(세액공제)	배당총액화가산
	제외 자기주식의 자본전입의제배당, 재평가차익자본전입, 지분비율 증가 전입	배당가산 제외
배당처분액	법인세 신고시 익금산입 후 배당소득 처분된 금액	처분연도과속
집합기구이익	자본시장, 금융투자법률상 이익금	주식투자소득
대응비용원가	배당소득은 총액과세되며 대응비용, 투자손실·금융원가는 인정되지 않음	총액 과세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주간 안사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577호 / 주간 27호

2022. 7. 6. (수)

· 발행인: 이윤선
· 제작: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02) 829-7575
FAX: (02) 718-8565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 매일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배당소득의 종합소득과세여부와 관련 쟁점들	표지
긴급시사해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등 부동산의 범위	2
CEO에세이	CEO, 끝이 좋아야 한다(2)	3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협회비 대납관련 문의	5
	- 중소기업법 및 법인세법상 중소기업 기준 문의	6
	- 소득세, 주민세 임대사업장 단위과세 여부 - 유형자산 취득 시 수선비등을 지원받은 경우	
눈에 맞는 절세미인	거래 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7
매일 절세재무요점	-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편	9
	- 주요 절세금융상품	10
직장인 Survival	조니 애플시드	11
최신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시 공제할 세액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르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산출세액에는 중간예납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임 (사전법령재산-939, 2021.11.08)	12
	- 의료법인이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하여 면세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인허가를 받지 못하여 건물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 공급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 (서면법령부가-6652, 2021.11.11)	13
세정뉴스와 해설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 5.0% 인상... 월환산액 201만580원	14
마케팅 Tax consulting	유형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교환가치 반영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됨	12
세무정보	- 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업승계 세무컨설팅 최초 실시	15
	- 2021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30
회계정보	2023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업종 사전예고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48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등 부동산의 범위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자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 · 증여 · 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 양수 컨설팅
(829-7575)

개념	정의, 상세내용(종합부동산세법의 각 조문)	조문
중부세 과세대상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제5조
주택의 개념	지방세법 제104조의 제3호(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 :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가능 구조의 건축물과 부속토지)	제2조 제3호
주택의 중부세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재산의 실질소유자 : 주택건물과 토지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세액을 시가표준비율로 안분함)	제7조
토지주와 건물주 동일한 경우	당연히 전액 합산과세(1세대1주택자는 일부금액 공제)	제8조
토지와 건물주의 명이가 다른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 포함 :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그 부속토지 포함하여 과세 - 중부세를 건물과 토지의 기준시가비율로 안분함	제8조 제4항
토지는 개인, 주택·건물은 법인 명의	주택이 있으므로 토지가액과 합산해 세액 산정(건물과 토지 기준 시가로 안분함)	제8조 제4항
건물의 주택기능 소멸·변경	주택을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용도변경시, 주택의 중부세 대신에 토지만의 중부세로 별도합산계산함	제12조

CEO, 끝이 좋아야 한다(3)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행백리자반구십(行百里者半九十) 백리길을 감에는 처음 구십리와 나머지 십리가 서로 맞먹는다.”

옛 중국 진(秦)나라 무왕(武王)이 말년에 무리수를 자행하니 이에 대해 걱정한 신하가 간(諫)한 말이다.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나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과 짝이 맞는 말씀이다.

즉 가능한 한 ‘적극적 끝내기’를 하라는 말이다. 마음을 비워 CEO의 자리를 이양하고 의연하게 새로운 삶이나 죽음을 맞으라는 ‘소극적 끝내기’는 이미 지난 컬럼에서 얘기한 바 있다.

적극적 끝내기의 첫째는 무엇보다 구태와 낡은 사람과 ‘악업’을 청산하는 일이다. 한나라 고조 유방이 천하를 얻었다. 그 후 그는 공신들을 차례로 처단했다. 명장 한신도 걸리적거리다가 체포의 몸이 되었다.

“토사구팽(兔死狗烹) 토끼를 사냥하고 나면 사냥개는 쓸모가 없어져서 삶아 먹히는구나!” 한신이 처형되면서 뱀은 말이다. 한국에서도 유명한 어느 정치인이 사용했다. 명퇴 등을 겪으면서 사회적으로 널리 유행어가 되기도 했다.

구태와 낡은 사람 걷어내야

“천하를 잡을 때는 함께 했지만 천하를 다스릴 때는 함께 해서는 안된다.”

아예 미리 떠난 지혜로운 명참모 장량의 말이다. 다만 그런 상황에서도 유방의 사후까지 중용된 소하(蕭何)가 있을 뿐이다.

조선시대 세종대왕은 최고의 명군으로 칭송 받는다. 문물이 모두 풍성해지고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하지만 태종의 악역이 선행되지 않았다면 세종대왕의 눈부신 치적이 가능했겠는가. 태종은 공신이더라도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득이 되지 않는 낡은 사람(?) 자신의 측근조차 과감히

도려내면서 구태와 악업을 청산했다. 검찰 총장이 새로 등장하면 사시동기나 선배들이 퇴진해주는 관행도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닌가. 기업CEO의 퇴진 때도 훌륭한 전통은 이어가되 구태는 사라져야한다. 개별적으로는 잔인한 노릇이지만 떠날 사람과 남을 사람 또 새로운 인재 등용의 분수령이 되어야 한다.

둘째, CEO퇴진의 적극적 끝내기는 그가 힘써 모았던 부와 가치를 사회에 되돌려주는 일이다. ‘정승같이 돈을 벌어 정승같이 쓰는’ 슬기를 발휘하는 것이다. 멋지게 버는 것 못지 않게 멋지게 쓰는 게 너무 중요하다. 앤드루 카네기는 일평생 모은 재산 거의 전부를 사회에 환원했다. 돈으로 성공한 노블레스 오블라주의 모범이 아닐 수 없다.

가진 것을 사회로 환원 시켜야

현대 디지털 문명의 총아 빌 게이츠도 그들 부부의 이름을 딴 재단을 출범시켜 전세계에서 압도적으로 큰 재단이 되어 각종 자선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부호들이 계속 줄을 잇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떤 충격 속에서도 결코 카지노자본주의로 전락하지 않는 모양이다.

이러한 멋진 사회 환원은 돈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식과 경륜을 가진 전문경영인도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길이 있다. 일본의 산업연구기관으로 야노 경제연구소가 있다. 갓 퇴임한 각 산업 경영자와 기술자들의 산업연구보고서를 묶어 내는 기관이다. 이른바 현실을 생생하게 겪은 실물경제전문가들이 생생한 보고서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셋째, 마지막 적극적 끝내기는 ‘실패담’을 남기는 일이다. 대체로 성공한 CEO라고 불리는 이들은 자서전으로 자신을 과대포장하고 또 그것으로 돈버는 일에 유혹 당하기 쉽다. GE는 창사이래 사고와 실패사례를 기록 보관 활용하는 회사로도 독보적이다. 성공기 못지 않게 실패의 고백을 남겨 후배들에게 덕을 베푸는 일은 무엇보다 고귀한 일이다.

대한민국 곳곳에서도 CEO들의 적극적 끝내기가 넘쳐 ‘힘차고 새로운 시작’이 출발되기를 기대한다.

협회비 대납관련 문의

- Q** 해외상공회의소 협회비를 주기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관련 회사의 협회비를 1개의 회사에서 일괄납부를 한 후 납부한 회사에서 나머지 회사로 대납한 금액만큼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금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나 매출 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고 청구서만으로 청구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A** 협회비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한 대가금액이 아니므로 대신납부후 되돌려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급하지 않고 청구서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법 및 법인세법상 중소기업 기준 문의

- Q** 당사는 직전3년간 매출액이 천억이 넘기 때문에 중견회사에 속하였습니다.
 22년 예상 매출액을 계산해보니 천억 미만이 될것 같은데
 이런 경우, 22년 부터 바로 중소기업으로 적용이 되는것인지? 유예기간이 있는것인지?
 적용된다면 중소기업법이란 법인세법이란 상충되는 내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A**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법상의 중소기업의 요건에 해당되면 중소기업의 혜택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유예기간은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까지는 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으로 귀사의 경우와는 다른 경우입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과 세법상의 중소기업의 요건은 일치하지 않으므로 세법상의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세, 주민세 임대사업장 단위과세 여부

Q 현재 부산, 광주, 대전 등 2개이상의 임대사업장이 있으며 각 지점별로 직원 1명씩 근무중입니다.

해당 경우 소득세, 주민세 신고시 각 사업장 별로 소득세, 주민세(단위과세) 신고를 필수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한다면 어떤 사유와 기준으로 진행하는지와 그 방법을 안내부탁 드립니다.

A

1. 소득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본사에게 지점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면 본사에서 원천징수신고납부하면 됩니다.
2. 지방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주된 사업장소재지에 납부하면 되며, 주된 사업장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에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3. 따라서 귀사의 경우 각 지점사업장에서 별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신고납부하고 있다면 지방소득세는 지점사업장별로 원천징수 신고납부하면되지만, 주된 사업장에서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면 지방소득세도 주된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유형자산 취득 시 수선비등을 지원받은 경우

Q 법인회사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약서 상 시설물의 노후화로 욕실 및 싱크대교체비용 등(인테리어비용)을 수선비로 매도인에게 일부금액을 지원받기로 하고 상호 합의하에 매매대금에서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의사항) 위 경우와 같이 일부금액을 매매대금에서 감액한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ex) 매매대금에서 감액한 부분만큼 계산서 발행 후 비용으로 인식하는지요?

A

매매대금에서 감액하기로 상호합의하였다면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감액한 부분만큼 계산서 발행후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거래 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상담실 백종훈 차장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거래 대금에 대한 결제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기한이 경과된 대금결제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결제기한내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거래 당사간에 합의하여 지체상금을 주고받기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결제기한을 연장해주고 받게 되는 지체상금의 세무처리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아니한 지체상금은 이자소득이 아님

통상 대금결제의 지연으로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상호 합의된 일정금액을 주고받거나, 지연기간에 약정된 이율이나 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주고받게 된다.

지체상금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그 세무처리가 달라지는데,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 금전소비대차(자금대여)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받는업체)이나 지급이자(지급업체)로 처리하며,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않고 단순 지연에 대한 보상 성격의 금액이라면 이자소득으로 반영하지 않고 영업외손익으로 반영한다.

즉, 대금의 결제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해당 대가를 대여한 것으로 전환하고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이자소득으로 반영되는 것이며, 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이자지급시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금전소비대차로의 전환이 아닌 지급지연에 따른 단순한 지체상금은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또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9의5호의 규정에 의해 지출증빙수취특례가 적용된다.

♣ 서이46013-11968, 2003.11.14.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지체상금의 지급의무 확정시점의 손금으로 반영

법인세법상 사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과하는 지체상금(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지체상금은 제외)은 손금불산입 대상인 벌금·과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업과 관련된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지체상금(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지체상금은 제외)을 지급하였다면 손금산입이 가능하므로 지체상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반영하면 된다.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반영하지 아니함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당해 연체이자(재화·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 서면3팀-699, 2008.04.02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당해 연체이자는「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월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편

구분	현행	개편	
상생임대인?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신규 혹은 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	임대개시 시점 1세대1주택자+9억원 (기준시가)이하 주택	폐지(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해당)	
혜택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적용기한	2022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2년 연장)	

화

취득세 감면 개정안 주요 내용

기존	개정안
본인·배우자 주택보유 경험 없음	유지
부부 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	폐지
취득주택 가액 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	
3개월 이내 취득주택 전입 및 상시거주	유지
상속 외 3개월 이내 추가주택 취득 금지	
3년 이내 배우자 외 취득주택 매각·증여 금지	
3년 이내 취득주택 임대 등 용도변경 금지	

※감면 한도 : 200만원



주요 절세금융상품

금융상품	세제혜택	가입대상
ISA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초과분은 9% 분리과세)	만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 미만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제외)
연금저축 (보험/펀드)	납입금액(퇴직연금과 합산, 최대 700만원 한도)의 13.2%를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단,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자)는 16.5% 세액공제	제한없음
퇴직연금	개인형 IRP 또는 확정기여형(DC형) 계좌에 본인이 부담하여 납입한 금액(연금저축과 합산, 최대 700만원 한도)의 13.2%를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단,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자)는 16.5% 세액공제	1) 퇴직연금(DB, DC형) 가입된 직장근로자로서 추가적인 퇴직금을 준비하려는 자 2) 직장이동 등으로 퇴직금을 수령하여 IRP계좌로 운용하려는 자 3) 자영업자, 직역연금 가입자 등
주택청약 종합저축	연말정산시 해당 과세연도 납부금액의 40% 소득공제 (납부금액 한도가 240만원이므로 소득공제금액은 최대 96만원)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
저축성보험 (중신형 연금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제한없음
저축성보험 (월적립식)	* 보험차익 = 만기보험금(또는 중도해지환급금) - 납입보험료	
저축성보험 (기타)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비과세	65세 이상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조합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조합원
조합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단, 농특세 1.4%과세)	조합원
농어가 목돈 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및 계약기간 만료시 소정의 저축장려금 지급	농업인, 어업인, 양축인, 임업인



조니애플시드

미국인들은 무언가 매우 특별하게 말하고 싶을 때, "애플파이 같다" 라고 한다.

또 미국의 가장 큰 도시인 뉴욕을 부를 때 "가장 큰 사과"라고도 한다.

이처럼 미국에서 사과는 매우 미국적이고 특별하다.

사과를 이렇게 특별한 상징으로 만든 배경에는 한 사람이 있었다.

1774년 태어난 존 채프먼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그는 미국 개척시대 초기, 길조차 제대로 없던 많은 지역을 돌며 사과 씨를 뿌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과 씨앗과 묘목을 나누어 주었다.

주인 없는 땅을 일구기도 하고 빌리기도 해서 계속해서 농사를 지었다.

초기 정착민들에게 기르기 쉽고 생과일로 먹기도 하지만 요리를 해서 먹을 수도 있고, 말리거나 설탕에 절여서 먹을 수도 있어서 한 번 수확하면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사과는 매우 유용한 식품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조니 애플시드'라는 별명으로 불렀다.

채프먼이 그렇게 돌아다닌 기간은 40년이 넘었다. 일생동안 본인이 직접 일구었거나 씨를 주어서 조성된 사과밭은 다 합치면 무려 26만km²나 된다.

아무 대가 없이 평생 사과를 보급한 헌신과 희생으로 그는 아직까지도 개척자 정신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전해지고 있다.

점점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쫓아가는 시대로 변해가는 지금,

우리는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으면 내일은 누군가가 그 그늘에서 쉬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당장 가진 것에 대한 욕심보다는 하나를 내어주고 함께 미래를 위해 나아가는 것이 내 주변, 더 나아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인디애나의 포트웨인 부근에 묻힌 그의 묘비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다 간 사람이 잠들어 있다"고 새겨져 있다.

최신 판례 예규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시 공제할 세액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르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산출세액에는 중간예납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임

서면법인-3237, 2021.08.11

질 의

- 질의법인은 'XX.XX.XX'에 설립되어 BB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 화재가 발생하여 사무실과 창고가 전부 전소되어 법인세에 대해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하려고 함

질의

- 재해손실 세액공제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않은 법인세'에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시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라 법인세에서 공제할 세액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르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산출세액에는 중간예납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피출자기업이 설립당시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법령법인-2770, 2021.09.27

질 의

- A법인 B법인 설립 시 자본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B법인의 주식을 취득함

- B법인은 설립등기 이후 벤처기업 확인을 진행하여 그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예정이며
- 설립당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

질의요지

- 기업의 설립 시 자본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다음 과세연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의 '벤처기업' 등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내국법인이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피출자기업이 설립당시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Marketing Tax consulting

유형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교환가치 반영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됨

내국법인이 양도한 유형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 감정가액이 적절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음

사전법령법인-1514, 2021.11.04

질 의

- A법인은 항공기 운수사업(헬리콥터 운행)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1.10월 보유하고 있던 헬리콥

터를 특수관계법인에게 2개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1,55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 거래당시의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는 불분명함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양도한 유형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균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항공기 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양도한 헬리콥터에 대한 거래 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하여「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함에 있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지 않아 적절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의료법인이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하여 면세 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인허가를 받지 못하여 건물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 공급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법령부가-6652, 2021.11.11

질의

- 갑법인은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면세사업자로 '21.1월 사업장과 별도 소재지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 집합건물(지하 지상6층 근린생활시설이며, 이

하 "쟁점건물") 중 지하층과 지상 3 ~ 6층을 취득하였고, 1 ~ 2층은 다른 을법인이 취득하여 과세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장기요양기관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동일 건축물 내에 다른 업종 영위시 요양기관 인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인허가를 받지 못한 채 쟁점건물은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공실 상태이며
 - 「의료법」상 요양병원등 의료기관은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편의시설로만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그 외 사업(임대업 포함)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임
- 질의법인은 쟁점건물 중 6층을 과세사업자인 을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함

질의내용

- 의료법인이 면제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인허가가 나지 않아 건물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 신

의료법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하여 면세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집합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인허가를 받지 못하여 해당 건물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의료법인이 해당 건물을 면세사업에 활용이 어려워 과세사업으로 전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 5.0% 인상...월환산액 201만58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천620원으로 정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5.1%)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천530원(인상률 16.4%),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9%), 작년 8천720원(1.5%), 올해 9천160원(5.1%)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의 기준 역할도 한다.

국세청, 135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1.2조원 지급

국세청이 8월 지급 예정인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28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달 지급규모는 135만 가구에 1조2000억원이다. 코로나19와 고물가로 어려운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법정지급 시기를 두 달 앞당겨 지급한다.

원래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총 규모는 184만 가구, 지급액은 2조256억원이지만, 앞선 지난해 12월에 지급한 상반기분 442억원, 올해 4월 하반기 조기지급액

3792억원을 뺀 나머지를 이번에 지급한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가구당 지급액의 경우 근로장려금만 받는 가구는 100만원, 근로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가구는 227만원을 받는다.

반기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202만 가구 중 18만 가구는 기준보다 재산이나 소득이 많아 지급에서 제외됐다.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전년도에 비해 지급대상은 33만 가구, 지급액은 1595억원 증가했으며, 이는 지급대상 소득기준이 200만원씩 올라 받는 사람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계좌입금 신청한 경우 오늘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 수령 신청 가구는 우편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 가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으로 연락하면 된다.

오늘부터 1분기 손실보상 신청... 신속보상 확정 63만곳 대상

올해 1분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과 지급이 오늘부터 개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 가운데 수령액이 확정된 63만개를 대상으로 우선 신청을 받는다.

신청 첫 10일간은 혼잡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가 적용되는데,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0 혹은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의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1월 1일~3월 31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이 중 신속보상 대상은 정부가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서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 즉시 지급받는다.

중기부가 확정된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에 따르면 이번 신속보상 대상 사업체의 51.8%는 하한액인 100만원을 받는다. 상한액인 1억원을 받는 업체는 952곳으로 0.2% 수준이다.

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최초 실시

- 국세청, 2022. 6

- (실시배경) 최근 창업세대의 고령화로 가업승계가 중요해졌으나, 관련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계획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여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가업상속공제 등의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주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최초로 실시하여 중소기업인의 가업승계를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 (컨설팅 내용)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사전·사후요건을 진단하여,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가업승계와 관련한 서면질의는 최우선하여 처리합니다.
 - 신청기업이 개별 사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면 구체적 판단사항에 대하여 4주 이내 의견을 제공하는 등 상시 자문도 실시하고,
 - 컨설팅 중 구체적인 해석이 없어 불편을 주고 있는 경우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세법 해석이 제공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신청방법) 컨설팅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가업승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2. 7. 1.(금) ~ 8. 1.(월)까지 홈택스 또는 기업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결과는 서면심사를 거쳐 '22. 8. 31.(수)까지 알려드립니다.

1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최초 실시

- (실시배경)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의 99.9%, 고용시장의 82.7%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왔습니다.
 - 최근 창업세대 경영자의 고령화로 은퇴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가업승계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었으나,
 - 가업상속공제 등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10년 이상의 장기간 계획과 사전·사후요건 충족을 위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여 컨설팅이나 정보제공을 원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정부추진 우선과제 |

- 가업승계과정 원활화를 위해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일시적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65.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가업승계 컨설팅 및 정보 제공'(20.5%), '경영자 및 후계자 전문 교육'(7.8%)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출처: 2021 중소기업가업실태조사 보고서(중소기업중앙회, '21. 12.)

- 이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2년 9월부터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최초로 실시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합니다.
- (개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이란, 각 지방국세청에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구성하여 기업별 상황에 맞는 가업승계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준비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 이미 가업을 승계한 기업에게는 의무준수를 위해 유의할 점을 안내하는 1:1 맞춤형 세정지원제도입니다.

2

가업승계를 위한 세법상 지원제도

- 세법상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으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통해 기업이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 가업상속공제란?

- (개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를 하여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적용요건 및 혜택		
세제	피상속인이 경영한 기간에 따라	
혜택	(10년 이상)200억 원, (20년이상)300억 원, (30년이상)500억 원 공제	
적용 요건	피상속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 • 피상속인 포함 최대주주 지분 50%(상장 30%) 이상을 10년간 보유
	상속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이상이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 • 상속인은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하며, 상속개시 당시의 고용인원(총급여)을 유지

②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란?**

- (개요) 경영주가 자녀에게 기업을 사전 승계하기 위해 기업주식을 증여할 경우 100억 원 한도로 10~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이후 상속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적용요건 및 혜택		
세제 혜택	증여재산에 대해 100억 원을 한도로 5억 원 공제 후, 잔액에 대해 30억 원까지 10%, 100억 원까지 20% 증여세율 적용	
적용 요건	증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60세 이상 부모
	수증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기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증여세 추징

3 「기업승계 세무컨설팅」 지원 내용

| 기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 흐름 |



- (컨설팅 기간) 대상 선정일부터 1년간 기업승계 관련 세무컨설팅을 지원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1년 연장 가능합니다.
- (컨설팅 내용) 정기 컨설팅은 1회 이상 실시하고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컨설팅도 가능합니다.
 - (요건 진단) 지방청 대면상담, 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컨설팅 시점을 기준으로 기업승계 세제혜택을 위한 사전요건과 사후요건을 진단하고,
 -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사항을 안내하는 등 기업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기업 대표자 주소지와 기업 본점 소재지가 원격지인 경우 등에는 서면 컨설팅도 가능합니다.

※ 컨설팅 시점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진단하며, 추후 사실관계가 변경되는 경우 진단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시 자문실시) 컨설팅 대상 기업이 가업상속 공제 가능 여부나 사후관리 위반 추정사유 등을 자문요청하면, 구체적 판단사항에 대하여 4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 (서면질의 우선처리) 가업승계와 관련한 서면질의를 제출하는 경우 최우선 처리하여 불확실성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가업승계 관련 법령해석 신속 제공

- (세법 해석)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과정에서 관련법령의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롭게 세법 해석을 제공하고,
 - 기존 해석 중 경제환경 등 세정여건 변화에 따라 납세자의 입장을 반영하여 변경할 여지가 있는 건은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이나,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해석 변경을 검토하는 등
 - 가업승계제도의 입법취지와 납세자의 편익을 최대한 고려하여 필요한 법령해석이 신속하게 제공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既 변경 사례) 실제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기존 해석을 변경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2. 5. 기재부) 종전에는 건강상의 이유를 제외하고 피상속인이 사망일까지 경영을 해야만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10년 이상 경영하였다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더라도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고,
 - (22. 1. 기재부) 피상속인이 이미 주식 5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한 상태라면, 종전에는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 공제대상이었으나, 이제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보유한 지 10년 안된 주식도 포함되며,
 - (22. 5.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과거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불분명했던 유한책임회사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5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 방법

- (신청대상) ①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하였거나, ②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 *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 영위,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1,500억

- 원 이하), 독립성 기준 (조특령 §2① 1,3호) 충족
- 신청한 기업 중 성실납세기업이나 고용인원이 많아 고용창출효과가 큰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합니다.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우선 선정순위 |

- (1순위) 조사모범 및 납세자의 날 표창된 모범납세기업(최근 5년 이내)
- (2순위)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대상 기업
- (3순위) 세금납부를 통해 적립된 세금포인트가 많은 기업
- (4순위) 직전 사업연도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 (5순위)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이 큰 기업
- (6순위)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기업

- (신청기간 및 방법)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인은 '22. 7. 1.(금) ~ 8. 1.(월)¹⁾까지 홈택스²⁾ 또는 기업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1차 접수기간, 2차 접수는 추후 공지예정
 - 2) 홈택스 신청화면(접근 경로, 컨설팅 신청화면) [참고 2]
- (제출서류)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서 [참고 3]
- (컨설팅 대상 선정) 신청기업에 대해 우선 선정순위에 따라 서면심사를 거쳐 1차 선정결과를 '22. 8. 31.(수)까지 알려드립니다.

6 향후 추진계획

- 국세청은 최초로 도입되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유관 단체·협회에게 제도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안내 코너에 관련내용을 게시하여 기업인들의 제도 이해를 돕겠습니다.
 - * 접근경로 : 국세정보 > 국세정책/제도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
- 또한, 컨설팅 과정에서 가업승계에 관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을 귀 기울여 개선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부처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편, 국세청에서는 향후 가업승계가 예상되는 '잠재적 가업승계 대상자'에 대해서도 꾸준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 더 많은 유망 중소기업이 가업승계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 1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의 주요 내용
-------------	-----------------------------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및 선정〉

- (신청대상)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하였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
 - *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 영위,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1,500억 원 이하), 독립성 기준 (조특령 §2① 1,3호) 충족
- (신청기간 및 방법) '22. 7. 1(금)~8. 1.(월), 홈택스*, 우편, 방문 신청
 - * 접근경로: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가업승계' 조회
- (접수기관)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 성실지원납세국 소득재산세과
 - * 제출서류: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서
- (선정심사) 신청기업에 심사결과를 '22. 8. 31.(수)까지 서면으로 통지

〈세무컨설팅 실시〉

- (기간) 대상 선정일로부터 1년(희망기업의 경우 1년 연장가능)
- (요건진단) 컨설팅 시점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위한 사전·사후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미비한 부분의 보완 사항 등을 안내
- (상시 자문실시) 컨설팅 대상 기업이 가업상속 공제 가능 여부나 사후관리 위반 추정사유 등을 자문요청하면, 구체적 판단사항에 대하여 4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 (서면질의 우선처리) 가업승계와 관련한 질의가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청에서 최우선 처리하여 불확실성 조기 해소

참고 2

예상 질문 및 답변

1. 기업승계 세제상 혜택이 중견기업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컨설팅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된 이유는?

- 매출액이 4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도 기업승계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 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추후 컨설팅 대상 확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 기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인이 국세청 기업승계 지원팀의 컨설팅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는?

- 국세청 기업승계 지원팀의 결과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세무처리 및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세법에서 정하는 불복과정을 거쳐 적법여부를 다룰 수 있습니다.

3. 사전컨설팅 내용대로 신고를 하면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되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는 정부 결정세목으로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 필수 이므로, 사전컨설팅 여부와 세무조사 실시 여부는 무관합니다.
- 다만, 컨설팅을 통하여 기업승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을 파악하고, 이미 기업승계를 받은 경우에는 추후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4. 기업승계 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 제한이 있는지?

- 기업승계 지원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하고 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업 해당 업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 출판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등
<가업 제외 업종> 농·임·축산·어업, 주점업, 주차장운영업, 택배,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법무·회계서비스업, 입시학원, 스키장, 노래방, 게임장, 무도장, 아미용업, 욕탕, 세탁, 예식장 등

5. 기업상속공제와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차이는?

-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생전에 기업(법인)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고,
- 기업상속공제는 사후에 운영하는 기업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기업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6. 기업승계의 사전요건은 무엇을 말하는지?

- 기업승계를 받기 위한 사전요건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 분	기업상속공제	기업승계 증여특례
기업요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 (개인사업 포함)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 (개인사업 제외)
피상속인 (증여인)	지분 50%이상 보유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 50%이상 보유한 60세 이상 부모 (특수관계인 포함)
상속인 (수증인)	18세 이상인 거주자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기업종사	18세 이상인 거주자로 신고기한까지 기업종사

7. 기업승계의 사후요건은 무엇을 말하는지?

- 기업승계의 사후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사후관리기간(7년) 동안 충족해야 합니다.

구 분	기업상속공제	기업승계 증여특례
기업재산처분	기업용 자산을 20%이상 처분	-
기업 미종사	1) 2년 내 대표이사 미취임 2) 기업의 주된 업종 변경 3) 기업을 1년 이상 휴·폐업	1) 5년 내 대표이사 미취임 2) 기업의 주된 업종 변경 3) 기업을 1년 이상 휴·폐업
지분 감소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수증인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고용 미유지	근로자 수 및 급여 유지 미달	-

- 가업승계를 받은 이후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상속) 연 1.2%, (증여) 일 2.2/10,000

8.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중 어느 것이 더 절세효과가 큰지?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신청인이 컨설팅 시점에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요건충족 및 사후관리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등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납세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9.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인 경우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서면질의신청 시 국세청에서 최우선 처리하여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해 드립니다.
 - 또한, 컨설팅 내용대로 조건 유지하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여 가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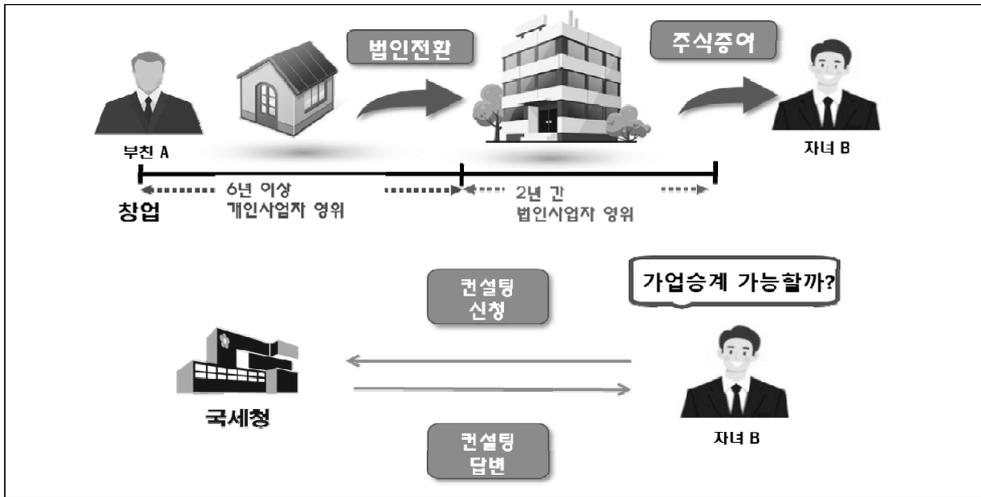
10. 가업승계 지원팀에게 모든 세무 문제를 공개해야 하는지?

- 가업승계 요건의 적정성 및 쟁점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만 공개하면 됩니다.
 - 다만, 컨설팅 결과는 컨설팅 시점에 제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판단하기 때문에 추후 사실관계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검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붙임 1 - 기업승계 세무컨설팅 예상 사례

사전 요건	<p>개인 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p> <p>*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기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기업을 영위한 기간 포함</p>
------------------	--

□ 사실관계



□ 컨설팅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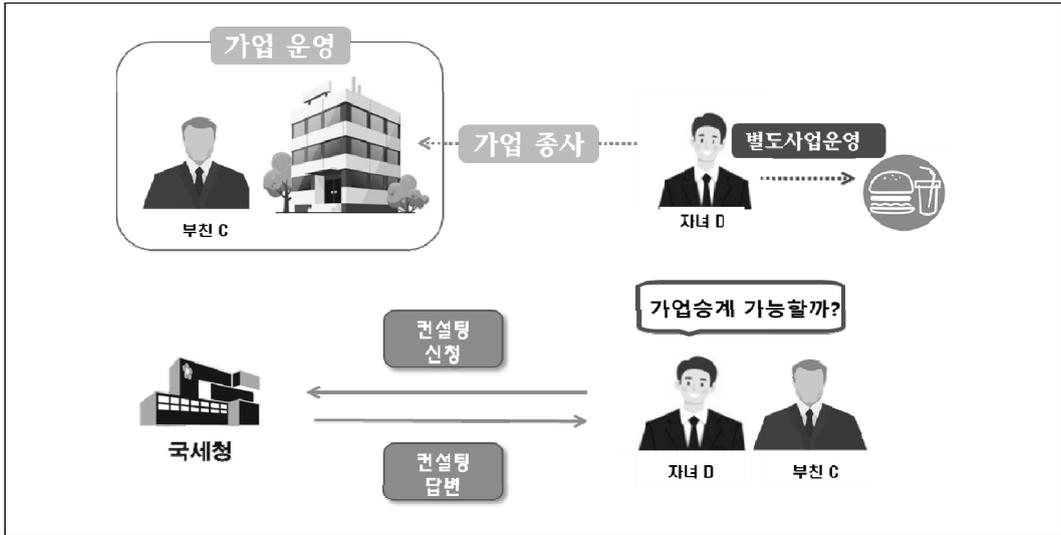
- 사주 A(65세)는 6년 이상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자동차 부품 제조업)를 '20. 3월경 사업확장을 위해 법인으로 전환
- 법인설립시 사주 A의 주식보유비율은 60%이며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던 중 대학을 졸업한 자녀 B에게 기업승계를 고려 중
- '22. 9월 기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 후 진단요청

□ 컨설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요건 진단) 증여자 60세 이상 요건(충족), 주식보유비율 50%이상(충족), 기업영위 기간(미충족*), 수증자 18세 이상 요건(충족) * 개인 6년, 법인 2년간 사업영위로 10년 요건 미충족 ○ (추가요건 제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기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기업을 영위한 기간 포함되므로, 업종변경 없이 2년 후 주식증여시 특례적용 가능

사전 요건	<p>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p> <p>* 실제 가업에 종사한 경우 겸업의 경우에도 가업승계 가능</p>
----------	--

□ 사실관계



□ 컨설팅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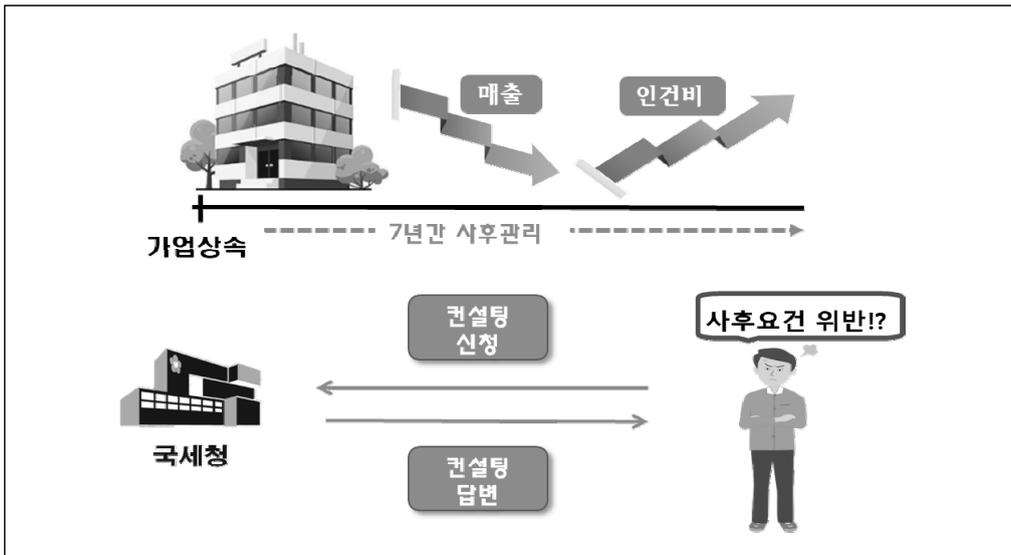
- (주)△△식품 대표이사 C는 10년 이상 식품 도소매업을 영위
- 대표이사 C의 주식보유비율은 70%이며, 자녀 D는 5년 전부터 (주)△△에 근무하고 있던 중 부업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프랜차이즈 빵집 운영희망
- '22. 9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 후 진단요청

□ 컨설팅 내용

- (사전요건 진단) 대표이사 재직 요건(충족), 주식보유비율 50%이상(충족), 가업영위 기간(충족), 상속인 2년 이상 가업 종사(충족)
- (추가의견 제시) 실제 父 회사에 종사한 경우, 다른 업종을 겸업하더라도 가업상속 공제 가능하므로 빵집 운영 가능함을 설명

사후 요건	가업상속 후 고용유지 요건 * 2020년부터 총급여액과 고용인원 기준 중 선택 가능
----------	---

□ 사실관계



□ 컨설팅 신청

- E는 아버가 운영하던 ㈜◆◆호텔을 '20년 5월 5일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시 가업상속공제 후 상속세 신고납부함
- E는 '20년 6월 대표이사 취임 후 ㈜◆◆호텔을 영위하던 중 코로나 영향으로 급격한 매출 감소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애로 사항 발생
- 기업회생을 위해 직원감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컨설팅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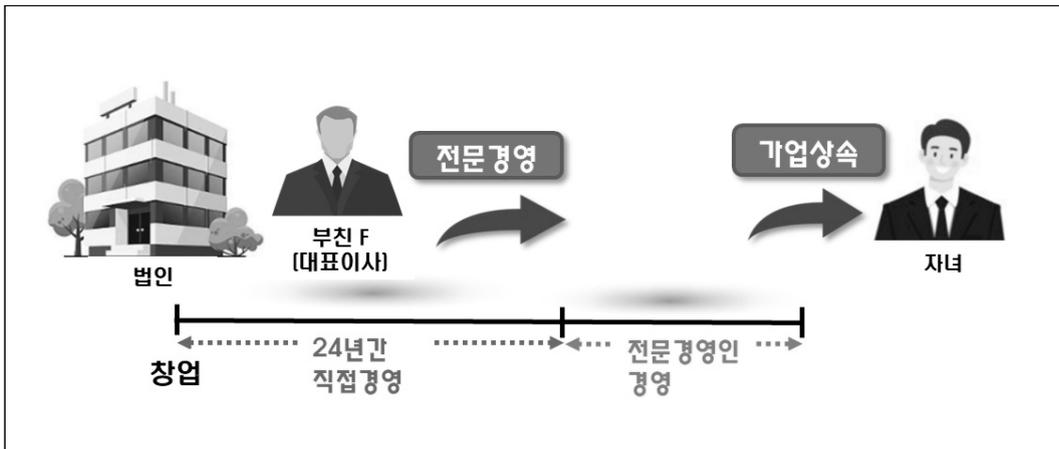
□ 컨설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요건 진단) 사후관리 기간(~'27. 5. 4.), 가업용 자산 유지(총족), 상속인 가업 종사 및 지분유지(총족), 고용유지(총족) ○ (추가이견 제시) 매년 기준총급여액(고용인원)의 80% 이상 유지하고, 사후관리 종료하는 '27년까지 연간 평균 기준 총급여액(고용인원)의 100% 유지하는 경우 추정사유 아님을 설명 * '20년 이후에는 고용인원과 총급여액 기준 중에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하므로, 인원 감축 결과 상속시점의 총급여액(고용인원)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사후관리 의무 위반 아님

붙임 2 - 기업승계 법령해석 변경 사례

사건 요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경우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 사실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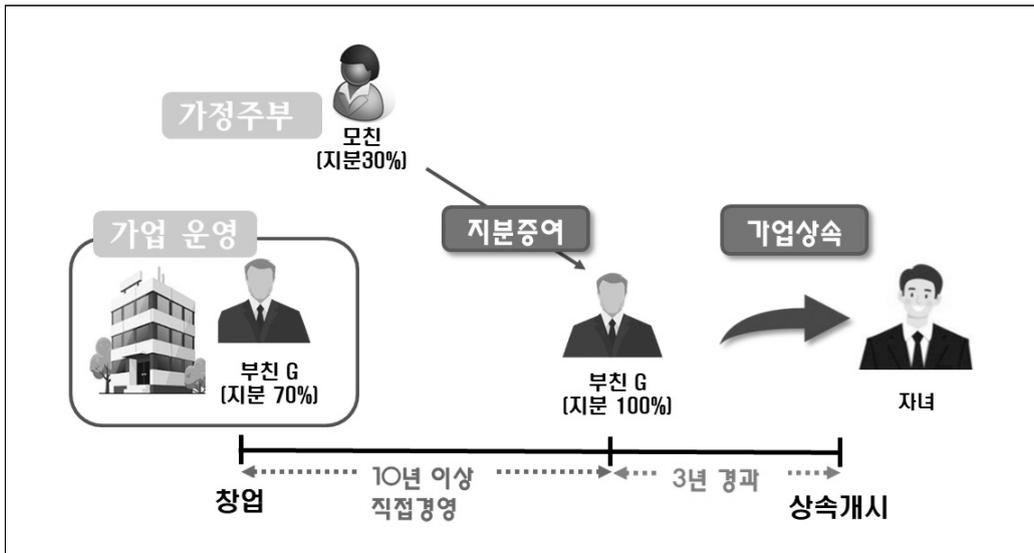
- 법인(중소기업)의 최대주주 F(74세)는 24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전문경영인에게 일시적으로 경영을 맡기고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임
- F가 경영에서 물러난 이후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종전해석으로는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함
-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41, 2014. 11. 14., 상속증여세과-622, 2021. 9. 30.

□ 적극해석

- 기업의 기술·경영노하우 전수를 지원하려는 취지는 피상속인·상속인 요건 및 사후관리를 통해서도 가능한 것이므로,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기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기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함
 -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 2022. 5. 30.

사건 요건	가업을 경영하던 부친이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도 가업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	--

□ 사실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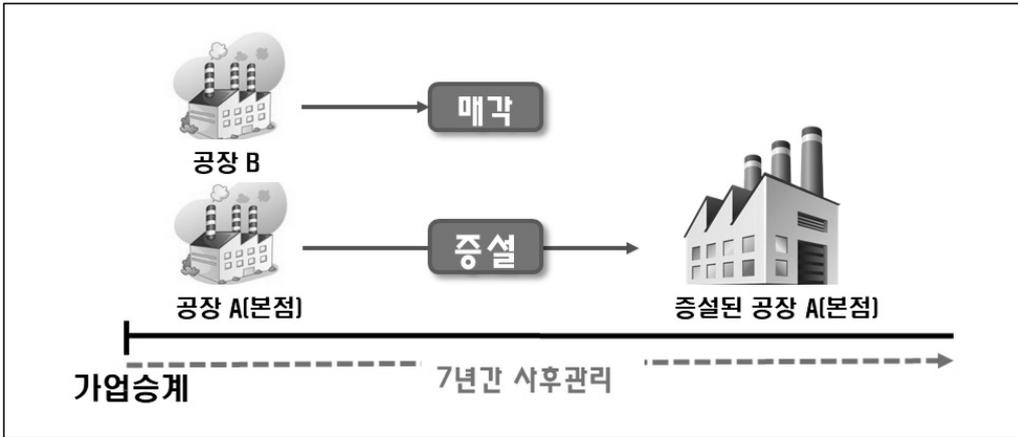
- 가업을 경영하는 최대주주 G(60세)가 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지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던 주식과 함께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 G가 가진 주식 중 10년 미만 보유 주식은 종전 해석상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85, 2014. 5. 14., 상속증여세과-153, 2014. 5. 22.

□ 적극해석

-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다면,
-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도 상속공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함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 1. 5.

사후 요건	기업승계주식을 증여받은 후 일부 공장을 매각하고 증설하는 경우 사후관리요건 위반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	---

□ 사실관계



- 법인(중소기업)의 최대주주 H(74세)는 '99년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경영을 영위하다 자녀 1인에게 주식 전부를 증여하여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음
- 법인은 2개의 사업장(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공장 1개를 매각하고 본점 공장을 증설하고자 하나, 종전 해석상 추정대상으로 보아 매각하지 못함
- * 상증세과-571, 2021. 8. 31.

□ 적극해석

- 가업을 생전에 원활히 승계하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는 증여자·수증자 요건 및 현 사후관리 규정을 통해서 달성 가능하므로
- 자산 매각 후 증설은 추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변경 검토 중

2021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 국세청, 2022. 6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및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21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오늘(6.28.) 일괄 지급합니다.
 -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분을 지난해까지는 8월에 지급하였으나, 올해에는 2개월 앞당겨 6월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지급규모) 반기 근로장려금 총 지급규모는 전년 대비 33만 가구 1,595억 원 증가한 총 184만 가구 2조 256억 원입니다.
 - (6월 지급) 이번 6월에는 지난해 12월에 지급한 상반기분(4,421억 원)과 지난 4월 하반기 조기자급액(3,792억 원)을 차감하여 135만 가구에 1조 2천억 원을 지급합니다.
 - (가구당 평균) 근로장려금만 받는 가구는 100만 원, 근로·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가구는 227만 원입니다.

 - (수령방법) 계좌입금 신청 가구는 오늘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수령 신청 가구는 우편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 와 본인 '신분증' 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상담)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안정적으로 집행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21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1. 지급 일정 및 규모

● 지급 일정

-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과 상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분을 통합하여 6월 28일 일괄 지급합니다.
-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가구 221만 가구¹⁾ 중 정기신청 전환²⁾된 19만 가구를 제외한 202만 가구(자녀장려금 동시 신청 16만 가구)에 대해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 1) 상반기분 신청(121만 가구) + 하반기분 신청(100만 가구)
 - 2) 반기신청가구 중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는 반기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정기신청가구로 전환하고 6월 24일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전환 안내문」을 발송하여 안내
- 심사대상인 202만 가구 중 18만 가구는 재산요건¹⁾ 또는 소득요건²⁾을 충족하지 못하여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1)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2) (단독) 22백만 원 미만, (홀벌이) 32백만 원 미만,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

● 지급 규모

- '21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총 지급규모는 184만 가구 2조 256억 원이며, 전년 대비 33만 가구 1천 59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 * (사유) '21년 귀속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이 가구 유형별로 2백만 원씩 상향
(만 가구, 억 원)

구분	'21년 귀속								'20년 귀속		
	연간 합계		상반기		조기지급		하반기		연간 합계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합 계	184	20,256	101	4,421	45	3,792	135	12,043	151	18,661	
근로	총액	170	17,075	92	3,936	41	3,352	121	9,787	136	15,095
	평균	100만 원		43만 원		82만 원		81만 원		111만 원	
근로·자녀	총액	14	3,181	9	485	4	440	14	2,256	15	3,566
	평균	227만 원		54만 원		110만 원		161만 원		238만 원	

- * 기지급 가구와 하반기 가구를 합한 수치가 연간 합계 가구와 차이가 나는 것은 중복되는 가구가 있기 때문임
- 이번 6월에는 지난해 12월에 지급한 상반기분(4,421억 원)과 지난 4월 하반기 조기지급액(3,792억 원)*을 차감하여 135만 가구에게 1조 2천억 원을 지급합니다.
- * 코로나19 확진자와 동해안 산불피해지역 거주자에게 조기지급(적극행정)

(만 가구, 억 원)

합계		근로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합계	근로	자녀
135	12,043	121	9,787	14	2,256	1,038	1,218

- 다만,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정산금액 보다 기지급액(상반기·조기지급)이 많은 가구는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환수*합니다.

* 환수대상자가 과다 수령분을 즉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고지를 요청하면 납부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2. 유형별 지급 현황

- (가구유형별) 가구 기준으로 보면, 단독 가구가 124만 가구(6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홑벌이 가구 53만 가구(28.8%), 맞벌이 가구 7만 가구(3.8%) 순입니다.
 - 금액* 기준으로 보면, 단독 가구 1조 927억 원(54.0%), 홑벌이 가구 8,248억 원*(40.7%), 맞벌이 가구 1,081억 원*(5.3%) 순입니다.
 - * 자녀장려금이 포함된 금액
- (근로유형별) 가구 기준으로 보면, 일용근로* 가구가 103만 가구(56.0%), 상용근로 가구는 81만 가구(44.0%)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22만 가구가 더 많습니다.
 - * (일용근로자)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 등
 - 금액 기준으로 보면, 일용근로 가구 1조 1,184억 원(55.2%), 상용근로 가구 9,072억 원(44.8%)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2,112억 원 더 많습니다.
- (연령대별) 가구 기준으로 보면, 60대 이상이 71만 가구(3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20대 이하가 50만 가구(27.2%)이며 60대 이상과 20대 이하가 전체의 6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금액 기준으로 보면, 60대 이상(7,942억 원), 20대 이하(4,319억 원), 50대(3,280억 원), 40대(2,837억 원), 30대(1,878억 원) 순입니다.

II 장려금 수령 및 지급결과 확인 방법 안내

1. 장려금 수령 방법

- 근로장려금을 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에는 6월 28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 현금을 수령하고자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¹⁾’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수령²⁾할 수 있습니다.
 - 1)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 홈택스(접속 > 마이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우편물보기)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음
 - 2) (대리인 수령 시)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지참

2. 지급결과 확인 방법

- 심사결과는 오늘(6월 28일) 우편으로 발송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미리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동응답시스템, 「장려금 상담센터」,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됩니다.
 - 자동응답시스템 ☎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6월 28일부터 7월 12일까지 반기장려금과 관련한 궁금증에 대해 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올해는 상담전화민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최대 100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 집중예상기간(6. 28.~7. 5.): 100명, 기타기간(7. 6.~7. 12.): 20명
 - 홈택스: www.hometax.go.kr
 - 홈택스 접속 → ①조회/발급 → ②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 ③반기 심사진행 조회
 - 손택스: 모바일 앱
 - 손택스 접속 → ①신청/제출 → ②근로장려금(반기) → ③심사진행현황 조회

III 미수령 장려금 찾아주기 안내

- 장려금 수급자가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녀장려금은 올해 6월 현재 3만 가구, 132억 원입니다. 수급자께서는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에서 미수령 장려금을 확인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 (홈택스) 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국세환급금 찾기」
- ▶ (손택스(모바일 앱)) 손택스 앱 실행 > 조회발급 > 「국세환급금 찾기」

- 미수령 장려금을 받는 방법
 - (계좌 이체) 홈택스·손택스 등으로 본인의 계좌를 신고*하면 해당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 * (홈택스) 조회·발급 → 국세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 →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 (손택스) 조회·발급 → 국세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 → 도움말 →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 (현금 수령) 홈택스에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출력하고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 (홈택스) 조회·발급 → 국세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 → 통지서 재출력

참고 1 - 주요 문답 사례 (Q&A)

사례 1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왜 지급받지 못하나요?

-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자 중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자로 전환*되어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기 근로장려금 심사 후 8월에 지급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 *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전환 안내문」 발송(6. 24.)
- (지급요건 미충족) 심사결과 재산요건* 또는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
 - * (단독) 22백만 원 미만, (홀벌이) 32백만 원 미만,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
- (기지급액 과다) 심사결과 연간 산정액 보다 상반기분 지급액 등 기지급액이 많은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례 2

우편으로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전환 안내문'을 받았는데 이게 뭔가요?

- 반기 신청은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반기 신청자 중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자로 전환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00의6③)
 - 정기신청자로 전환된 반기신청자에게는 6월 24일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전환 안내문」을 우편으로 안내하였으며, 8월에 심사하여 지급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사례 3 내가 받을 근로장려금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 국세청에서 우편 발송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결정통지서를 받기 전에 미리 확인하려면 홈택스(손택스), 자동 응답 시스템(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4 작년에는 반기 근로장려금을 3번 받았는데, 올해도 3번 받는 건가요?

- 작년까지는 상반기분(12월 지급), 하반기분(6월 지급), 정산분(8월 지급)으로 3회 나누어 지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하반기분 지급시기에 상반기 정산분을 함께 지급하도록 개정되어 2회만 지급합니다. 상반기분은 지난해 12월에 지급하였고, 하반기분과 상반기 정산분을 6월 28일에 지급한 것입니다.

사례 5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6월에 받을 수 있나요?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심사결과 근로장려금을 받을 금액이 있다면 6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하반기 모두 신청하지 않았다면 6월에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올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심사결과 근로장려금 수급자격을 충족할 경우에 기한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후 신청의 경우에는 받을 금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6 '21년 귀속 반기 정산분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받나요?

- (계좌 신고시)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 (계좌 미신고 시) 국세청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수령 시)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에 있는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국세환급금통지서 분실 시) 「홈택스 접속 → 마이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우편물보기」에서 직접 출력할 있습니다.

참고 2 -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개요

제도취지	◇ 소득 발생시점('21년)과 장려금 지급시점('22년 9월) 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2019년 귀속부터 도입)		
신청자격 (지급요건)	◇ 근로소득만 있는 자(신청자 및 그 배우자 모두) *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정기 또는 반기에 선택하여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재산 요건		
	구 분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부부합산)	2,200만 원	3,200만 원
	재산	2억 원 미만(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지급요건 판단 기준일	◇ 반기신청 시: 소득 발생연도의 전년도 기준 반기신청 정산 시: 소득 발생연도 기준 '21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판단 기준		
	구 분	상반기	하반기
	가구원	'20. 12. 31.	'20. 12. 31.
	소득	'20년 연간 총소득 ¹⁾	'20년 연간 총소득
	재산	'20. 6. 1.	'20. 6. 1.
	총급여액 ²⁾	'21년 추정소득	'21년 발생소득
	1) 연간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2) 장려금을 산정하기 위한 총급여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액		
신청 및 지급	◇ 반기분 신청 및 지급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신청	당해연도 9.1. ~ 9.15.	다음연도 3.1.~3.15.
	지급	당해연도 12월 지급	다음연도 6월 지급
		당해연도 추정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연간 예상액 35%	당해연도 발생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연간 산정액과 상반기분 지급액을 비교하여 과소지급 시 추가지급, 과다지급 시 환수*
	* 환수금액이 발생하면,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세무서에 고지를 요청하여 납부할 수도 있음		

2023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

- 국세청, 2022. 6

- ▣ 금융감독원은 회사 및 감사인이 회계오류 취약 분야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결산 및 회계감사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 2023년에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와 중점 심사 대상 업종을 선정하여 사전 예고
 - * 최근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은 지도 및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에 한해 감리를 실시
 - 사전 예방지도 중심의 재무제표 심사 취지에 맞게 매년 6월에 다음 사업연도에 중점 점검할 분야를 미리 공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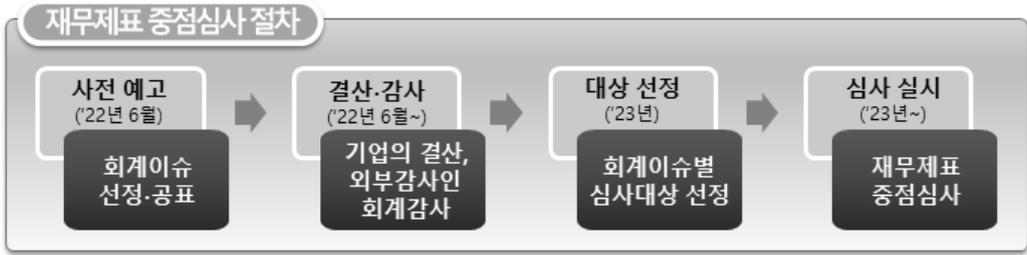
〈2023년 중점 점검 회계이슈〉

<p style="text-align: center;">수익 인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인식모형(5단계)에 따른 수익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고객과의 계약식별 ②수행의무 식별 ③거래가격 산정 ④거래가격을 수행의무 내 배분 ⑤의무이행시 수익인식 • 수익인식 관련 주식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주별(계약 유형 및 존속 기간별 등) 수익 구분, 계약잔액, 수익인식 판단근거 등 <p>※ (업종) 비제조업(단, 건설업은 제외)</p>	<p style="text-align: center;">현금및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내부통제절차 강화 및 충분한 검증절차 • 사업 특성을 고려한 영업·투자·재무활동별 현금흐름정보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현금거래 등 관련 주식 공시 <p>※ (업종) 전 업종</p>
<p style="text-align: center;">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손실충당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불이행·연체 같은 계약 위반, 채무자의 파산가능성 등 • 기대신용손실 측정 및 관련 주식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사용한 투입변수, 가정, 손실충당금 변동 내역과 변동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질적·양적 정보 <p>※ (업종) 제조업(단, 의약품 및 전자부품 업종 제외), 종합건설업, 운수업</p>	<p style="text-align: center;">사업결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대가와 식별가능 취득 자산 및 인수 부채 공정가치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가정 및 투입변수 등의 합리적인 근거 • 사업결합 내용 등 관련 주식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대가, 주요 취득 자산 및 인수 부채 금액 등 <p>※ (업종) 전 업종</p>



I 개요

- 금융감독원은 2023년에 상장회사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와 대상 업종을 사전 예고
 - 2022년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2023년 중에 회계오류 취약 분야별로 선정한 회사를 대상으로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



※ 실제 심사 대상회사 선정 시 경기상황 등을 반영하여 대상업종 변동 가능

- 회사는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2022년 재무제표를 신중히 작성하고, 감사인도 회계감사를 충실히 수행할 필요

II 2023년도 중점심사 대상 회계이슈

1. 수익 인식

- (선정배경) 新수익기준(K-IFRS 제1115호)이 '18년에 시행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동 수익기준에 따라 거래의 실질을 제대로 파악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히 적발되어
 - 수익인식모형(5단계)에 따라 수익을 적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
- (대상업종) 비제조업(단, 건설업은 제외)
 -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전체 대분류 코드 중 C00000(제조업)과 F00000(건설업) 제외
 - 최근 제조업 이외 다양한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어 비제조업(건설업은 제외)의 수익 인식만 점검
- (선정기준) 동종업종 대비 수익 변동성 등을 감안하여 대상회사 선정
- (유의사항) 고객과의 계약 조건과 관련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주

적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

① 아래 5단계 수익인식모형을 적용

수익인식모형(5단계)

핵심원칙 ▶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가 예상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	
계약식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과의 실질 계약을 식별(의무, 권리, 지급조건, 상업적 실질, 대가의 회수가능성) 계약의 결합, 계약의 변경 등을 고려
수행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에게 이전을 약속한 의무 식별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혹은 실질적으로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가격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으로부터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가를 산정 변동대가, 유의적인 금융요소, 비현금대가,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를 고려
가격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으로 비례하여 배분 등) 거래가격의 후속 변동효과 고려
수익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수익인식 고객에 약속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 이전의 지표 등을 고려하여 이행 시점 판단

② 범주별(계약 유형 및 존속 기간 등) 수익 구분, 계약 잔액, 수익 인식 판단 근거 등을 충실하게 주석 공시

회계오류 예시

- A사가 육류를 수입하여 甲사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 수입육에 대해 ①재고보관책임이 甲사에 있고, ②A사가 물리적으로 점유하지도 않으며, ③ 甲사가 국내 수요에 따라 A사에 수입 물량과 가격을 정해주는 등 A사의 수행의무는 동 거래를 주선하는 데 불과하므로
 - A사는 판매금액에서 수입원가를 차감한 순액만 수수료 수익으로 인식해야 함에도 판매금액과 수입원가 총액을 각각 매출과 매출원가로 인식함
- B사는 다양한 상품을 매입하여 온라인 플랫폼(모바일 앱 등)을 통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 자사 플랫폼에 신규로 가입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할인(20%) 쿠폰을 지급하여 회원들이 할인된 가격으로 자사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 B사는 해당 할인 쿠폰을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로 보아 회원들이 상품을 구매할 때 매출에서 차감하여 인식하여야 함에도 이를 판매관리비(광고비)로 인식하여 매출을 과대계상함

* 가격산정 시 고객이 기업에 갚아야 할 금액에 적용될 수 있는 공제나 그 밖의 항목(예: 쿠폰이나 상품권)은 고객에 지급할 대가로 보아 수익에서 차감



2.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 (선정배경) 최근 상장사 임직원의 횡령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내부통제 미흡 및 회계감사 부실 우려가 제기되었고
회사가 현금흐름표를 작성할 때 영업·투자·재무활동을 잘못 분류하여 지적받는 사례가 자주 나타남에 따라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실재성 확인 및 활동별 현금흐름 표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
- (대상업종) 특정 업종과의 연관성이 크지 않아 전 업종 점검
- (선정기준) 해당 자산규모와 상장된 주식시장(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등을 감안하여 표본 추출방식으로 대상회사 선정
- (유의사항) 현금및현금성자산 실증절차를 충실히 수행하고,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 1007호)에 따라 현금흐름 활동을 적정하게 분류하며, 관련 주석 요구사항도 충실하게 기재
 - ①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잔액 검증 절차(실사, 금융기관 조회 등)를 통해 실재성 확인
 - ②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현금흐름정보를 영업·투자·재무활동별로 구분 표시하고, 비현금거래 등을 충실하게 주석 공시

회계유류 예시

- ① C사 자금팀장 000은 장기간 업무를 전담하면서 상위 관리자의 검토·승인 없이 무단 출금, 매출채권 임의매각 등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자금을 횡령한 후
 -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직접 회계기록을 입력·조작하여 은행잔고대사절차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해외은행 외화예금을 허위로 과대계상하고 외부감사인이 현장감사 기간 중 감사장을 비운 틈을 타서 조작된 은행조회서를 원본과 바꿔치기하였음에도
 - C사는 내부통제절차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아 횡령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현금및현금성자산을 과대계상함
- ② D사가 원유정제처리 사업을 위해 공장을 매입할 때 발생한 미지급금은 회사의 미래수익을 창출할 자원 취득과 관련되므로 현금흐름표상 투자활동으로 분류돼야 함에도
 - D사는 이를 영업활동으로 분류하여 현금흐름표에 표시함

3.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 (선정배경) 최근 여러 국내외 경제적 악재(금리인상, 원자재가격 상승 등)로 인해 기업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매출채권, 미수금 등의 손상 여부를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손실충당금을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존재함에 따라
 - 매출채권 등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대해 기대신용손실*을 적정하게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는지 점검할 필요
 - * 기대존속기간에 걸친 신용손실(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 간 차이의 현재가치)의 확률가중추정치

- (대상업종) 제조업(의약품·전자부품 제외), 종합건설업, 운수업
 <심사 대상 업종>

분류 코드*	해당 업종
C00000(C21000 및 C26000 제외)	제조업(의약품 및 전자부품 제외)
F41000	종합건설업
H00000	운수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대분류 또는 중분류 코드

- 타 업종보다 원자재 사용 비중이나 부채비율이 높은 업종 점검
- (선정기준) 매출채권회전을 변동 추이, 동종업종 대비 관련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설정률 차이 등을 감안하여 대상회사 선정
- (유의사항) 금융상품기준서(K-IFRS 제1109호)에 따라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대해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적정하게 인식하고,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
 - ① 매 보고기간 말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 평가하여 해당 측정기간(12개월 혹은 전체) 동안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
 - * 예시) 채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채무불이행·연체 같은 계약 위반, 채무자의 파산 가능성·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등
 - ②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 가정의 근거, 손실충당금 변동 내역과 변동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질적·양적 정보 등을 충실하게 주석 공시

회계오류 예시

- ① E사가 시공사로 참여한 아파트형공장의 미분양으로 시행사 A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E사와 A사는 미분양 물건을 대규모 할인을 통해 빨리 분양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협의하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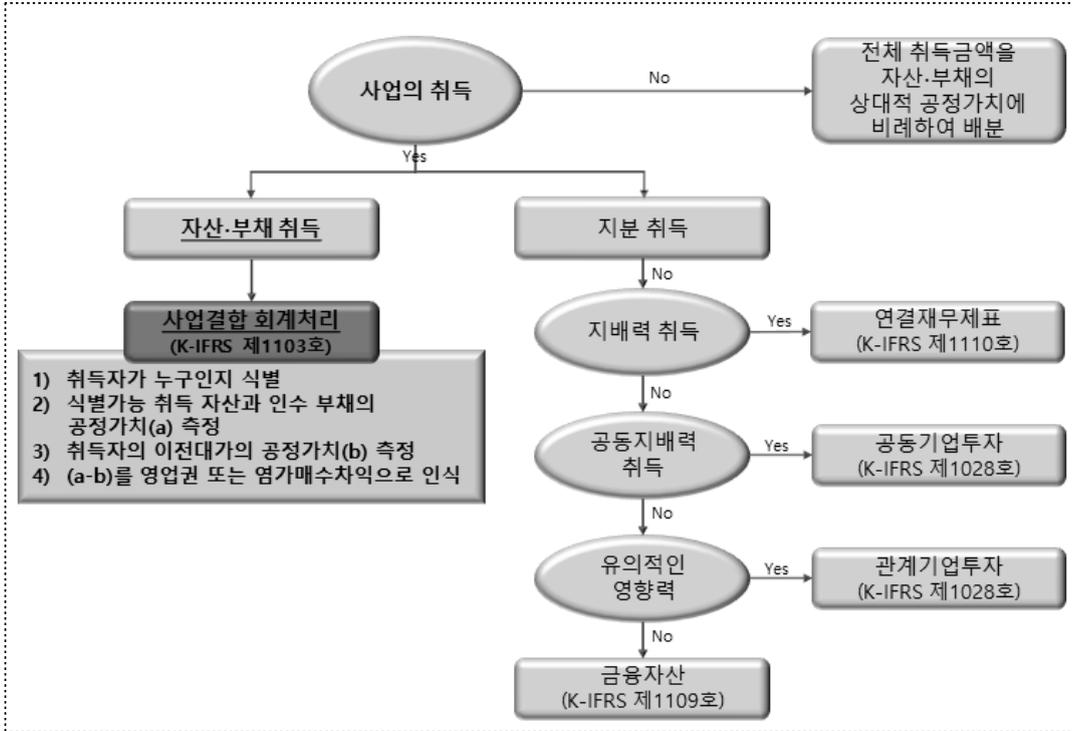


- 그 과정에서 甲사는 E사에 할인된 분양대금 및 필요경비를 반영한 예상 자금수지표를 통해 공사대금 전액 상황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렸음에도
 - E사는 해당 공사미수금에 대해 甲사의 채무상환능력을 감안하여 회수가능액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 손실충당금을 과소계상함
- ② F사는 거래처 乙사로부터 받을 미수금과 관련하여 ①완전자본잠식, ②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 ③금융기관 차입금 연체 발생 등 乙사의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손상증거가 다수 존재하였고
- 담보로 받은 설비자산도 이미 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음을 인지하였음에도
 - 회수가능액을 평가할 때 이를 제대로 감안하지 않아 손실충당금을 과소계상함

4. 사업결합

- (선정배경) 최근 사업 다각화, 업무영역 확장 등을 위한 기업결합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방법(지분인수·영업양수도·합병 등)이 다양하고 계약 조건도 복잡하므로
 - * 「'21년 기업결합 동향 분석」(공정위, '22.3.30.)에 따르면, '21년 기업결합은 건수와 금액이 각각 전년 대비 28.7%(248건) 및 66%(138조원) 증가
 - 사업의 정의 충족 여부, 취득일 현재 식별 가능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영업권 평가 등 사업결합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
- (대상업종) 특정 업종과의 연관성이 크지 않아 전 업종 점검
- (선정기준) 사업결합 여부, 거래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상회사 선정
- (유의사항) 사업의 정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식별 가능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를 합리적 근거에 기반하여 측정
 - ①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가 사업*의 구성요소를 충족하는 경우 취득법을 적용하여 공정가치로 인식
 - * 사업의 구성요소인 ①투입물 ②과정 ③산출물 중 최소한 '투입물'과 '과정' 요소가 필요
 - ② 사업결합의 내용과 재무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취득일 현재 총 이전대가의 공정가치,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주요 종류별 인식 금액 등 관련 정보를 충실하게 주석 공시

사업결합 회계처리 여부 판단



회계오류 예시

- ① G사는 영업망 강화를 위해 동일 지배하에 있는 특수관계자 甲사의 특정 지역 사업부를 취득하였는데, 이때 G사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병·의원과의 거래관계만 인수했으므로 이는 사업의 취득이 아닌* 무형자산(고객관계) 취득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 * 甲사는 고객관계만 양도하고 영업 인력 등은 철수시켜, 사업의 기본 구성요소 중 ‘과정(예시: 경험을 갖춘 조직화된 노동력)’을 미충족
 - 해당 거래를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으로 판단하고 인수대가 중 해당 사업부의 순자산 장부금액 초과분을 자본잉여금 차감항목으로 회계처리함
 - ** G사는 K-IFRS에는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간 결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유사 기준서인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동일지배거래)을 적용
- ② H사는 종속회사를 취득하면서 이전대가, 취득일 현재 종속기업의 자산·부채 현황, 비지배지분금액 등 중요 사업결합 내용을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지 아니함



향후 계획

- 회사 및 감사인이 중점 점검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2022년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회계현안설명회 등을 통한 교육홍보 실시
- 금융감독원은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

붙임 1

회계이슈별 관련 기준서 주요내용

1 수익 인식

-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는 5단계의 수익인식모형*을 적용하여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가 예상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 * (5단계) ① 1단계 :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 ② 2단계 : 수행의무를 식별, ③ 3단계 : 거래가격을 산정, ④ 4단계 : 거래가격을 계약내 수행의무에 배분, ⑤ 5단계 :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

수익인식모형(5단계)

- (1) 계약의 식별 : 의무, 권리, 지급조건, 상업적 실질, 대가의 회수가능성
 -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약속
 - 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가능
 - 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지급조건을 식별가능
 - 계약의 결과로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의 위험, 시기, 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업적 실질 존재
 -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음
- (2) 수행의무식별 : 고객과의 계약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이전하기로 한 각 약속을 하나의 수행의무로 식별
 -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또는 재화나 용역의 묶음)
 - 실질적으로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예시 : 진행률 측정대상)
- (3) 거래가격의산정
 - 변동대가(기대값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중 사용)
 - 유의적 금융요소(현재가치로 측정)

- 비현금대가(공정가치 측정 원칙)
-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수익차감 또는 받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

(4) 거래가격의 배분

-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으로 비례하여 배분
- 할인료(모든 수행의무에 배분 또는 일부 수행의무에 배분)

(5) 수행의무이행

- 한 시점에 이행
- 기간에 걸쳐 이행
 - 수행하는 대로 고객이 효익을 얻고 소비
 -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
 - 기업 대체적 용도 없고, 수행완료 부분에 지급청구권

- 재무제표이용자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현금흐름의 특성, 시기, 불확실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수익의 구분, 계약 잔액, 수행의무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

②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 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는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충실하게 표현되고 검증가능해야 한다고 규정
-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에서는 재무상태표에 현금및현금성자산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기업의 현금및현금성자산 창출능력과 현금흐름 사용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제1007호(현금흐름표)에 따라 현금흐름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
- K-IFRS 제1007호(현금흐름표)에서는 회계기간 동안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을 각각의 활동별로 분류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금흐름 활동 구분

- 영업활동은 재화와 용역의 판매·제공 및 구입 등 주요 수익창출활동
- 투자활동은 유·무형 자산과 기타 장기성 자산의 취득 및 처분 등 미래수익과 미래현금흐름을 창출할 자원의 확보를 위한 활동
- 재무활동은 지분상품 발행, 차입 및 상환 등 기업의 납입자본과 차입금의 크기 및 구성 내용에 변동을 가져오는 활동

- 주식 발행을 통한 기업의 인수, 채무의 지분전환 등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투자활동과 재무활동 관련 비현금거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 사용이 제한된 금액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

③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에서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대해 최초 인식 후 매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전체기간을,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개월을 각각 측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측정하고,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이하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경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 (간편법)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매출채권·계약자산,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매출채권·계약자산과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측정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한 경우는 측정기간을 전체기간으로 함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고려사항

- 일정 범위의 발생 가능한 결과를 평가하여 산정한 금액
 - 화폐의 시간가치
 - 보고기간 말에 과거사건, 현재 상황과 미래 경제적 상황의 예측에 대한 정보로서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으며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
-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는 차입자의 영업성과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 변동, 기술변화에 따른 차입자 판매 제품의 수요 감소, 연체정보, 금융자산 외부 신용등급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변동 등 다양한 정보를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규정
- K-IFRS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에서는 재무제표이용자가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대한 신용위험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
-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 가정, 정보를 포함하여 기대신용손실의 인식 방법과 측정 방법
 - 재무제표이용자가 기대신용손실에서 생긴 재무제표의 금액, 기대신용손실액의 변동과 그 변동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양적, 질적 정보
 - 유의적인 신용위험의 집중도를 포함한 기업의 신용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정보

④ 사업결합

□ K-IFRS 제1103호(사업결합)에서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가 사업의 구성요소를 충족한 경

우 취득법*을 적용하도록 규정

* 취득자 식별 → 취득일 결정 → 식별할 수 있는 취득자산, 인수 부채,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인식과 측정 → 영업권이나 염가매수차익의 인식과 측정

사업의 정의

- 사업은 투입물 그리고 투입물에 적용하여 산출물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
 - (1) 투입물 : 하나 이상의 과정이 적용될 때 산출물을 창출하거나 산출물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모든 경제적 자원
 - (2) 과정 : 투입물에 적용할 때 산출물을 창출하거나 산출물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 표준, 프로토콜, 관례, 규칙
 - (3) 산출물 : 투입물과 그 투입물에 적용하는 과정의 결과물로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투자수익을 창출하거나 통상적인 활동에서 기타 수익을 창출하는 것

- 취득자는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 중 우발부채, 법인세, 종업원급여, 주식기준보상거래, 매각예정자산 등 인식원칙 또는 측정원칙의 예외 항목을 제외하고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취득일 현재 ①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의 취득일 공정가치의 합계액과 ②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 간 차이금액을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 또한, 재무제표이용자가 사업결합의 내용과 재무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총 이전대가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조건부 대가 약정과 보상자산, 취득한 수취채권 금액 등 보고기간에 생긴 모든 사업결합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

붙임 2 회계이슈 선정 현황('14~'22년)

대상회사 선정연도	중점점검 회계이슈
2014년	① 퇴직급여부채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 측정 ② 무형자산(영업권, 개발비) 평가 ③ 신종증권 등의 자본과 부채 분류기준 ④ 장기공사계약 관련 수익인식
2015년	⑤ 매출채권 매각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⑥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기재의 적정성 ⑦ 영업이익·이자비용 산정의 적정성 ⑧ 이연법인세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2016년	⑨ 미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 ⑩ 원자재 등 비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및 관련 공시 ⑪ 현금흐름표상 영업현금흐름 공시의 적정성 ⑫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2017년	⑬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⑭ 수주산업 공시의 적정성 ⑮ 반품·교환 회계처리의 적정성 ⑯ 신주인수권 등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적정성
2018년	⑰ 개발비 인식·평가의 적정성 ⑱ 국외매출(수주산업 제외)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⑲ 사업결합 회계처리의 적정성 ⑳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의 적정성
2019년	㉑ 新수익기준서에 따른 수익인식의 적정성 ㉒ 新금융상품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회계처리 적정성 ㉓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㉔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2020년	㉕ 新리스크기준서에 따른 회계처리의 적정성 ㉖ 총당부채·우발부채 등의 인식·측정 및 관련 주식 적정성 ㉗ 장기공사계약(조선·건설 외) 등 관련 수익인식 적정성 ㉘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2021년	㉙ 재고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㉚ 무형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영업권, 개발비 제외) ㉛ 국외매출 회계처리의 적정성 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적정성
2022년	㉝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의 적정성 ㉞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 인식의 적정성 ㉟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의 적정성 ㊱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정보 공시의 적정성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6월 24일(금)	6월 27일(월)	6월 28일(화)	6월 29일(수)	6월 30일(목)
미 달 러 (USD)	1300.70	1299.40	1285.60	1284.90	1292.90
일 본 엔 (JPY)	964.66	961.27	949.87	944.26	946.45
영 국 파 운 드 (GBP)	1595.63	1597.48	1577.11	1565.97	1567.32
캐 나 다 달 러 (CAD)	1001.77	1008.15	999.07	998.17	1003.03
홍 콩 달 러 (HKD)	165.71	165.54	163.83	163.76	164.77
위 안 화 (CNH)	193.77	193.97	192.07	191.92	192.75
유 로 화 (EUR)	1369.25	1373.86	1360.04	1352.49	1350.05
호 주 달 러 (AUD)	898.26	903.86	889.89	887.80	889.52
싱 가 폴 달 러 (SGD)	935.59	937.75	927.73	925.89	927.97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95.23	295.18	291.92	292.22	293.86